

 <p>NEW YORK STATE OF OPPORTUNITY.</p> <p>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p> <p>구분: 운영</p>	<p>정책명: 접근성 정책</p> <p>정책 번호: OPR-POL-001</p> <p>시행 기일: 2015년 6월 26일</p>
--	--

개요

OPRHP(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는 본 기관의 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방문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미국 장애인법), New York State Building Code(뉴욕주 건축 규정), 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뉴욕주 인권법) 공공시설 조항을 준수합니다.

정책

주립공원 및 유적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물리적 디자인, 특수 조정 가능한 놀이 시설, 통역 지원 및 적절한 편의를 통해 높일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축 또는 대규모 보수 공사를 거친 시설 및 보행로는 최신 접근성 디자인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모든 기존 시설 및 보행로는 최신 접근성 표준 준수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표준 미달인 항목은 개선책을 개발해 적용해야 합니다. 주립/국립 유적지로 등재되었거나 등재 자격이 있는 사유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 계획을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주 문화재 보호국)와 협의해 개발해야 하며, 이는 문화재 보호에 대한 OPRHP의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관에서 공공에 제공하는 신규 개발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최신 접근성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모든 기존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최신 접근성 표준 준수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표준 미달인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마련해 적용해야 합니다.

- 모든 합리적인 편의 요청은 시설 직원에게 전달되며, 실제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이행되어야 합니다.
- 휠체어는 모든 구역에서 통행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란 장애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개인이 주로 실내외 이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동 또는 전동 기기를 의미합니다.
- OPRHP 지침에 따라 장애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개인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전동 이동기기(OPDMD)를 주립공원 및 유적지 내 허용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시설을 이용하는 본인 또는 타인에게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2) 자연 또는 역사적 유적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특정 기기의 경우 시설에서 발행하는 허가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시설 방문 시 기기를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속도 제한 및 기타 안전 관련 요구 사항을 수립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허가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방문자가 많은 시간대에는 OPDMD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중에는 특정 통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방문자가 많아 기기 사용이 통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주말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을 돕도록 훈련받은 장애인 보조 동물의 경우, 기타 반려동물 제한 규정에 상관없이 모든 시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혹은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 등록증 또는 인증서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장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에 대한 필요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동물을 동반한 개인에게 다음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1) 장애 때문에 동물이 필요한 것이 맞는가, 2) 동물이 어떤 일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는가. 치료견이란 치료 및 심리적 안정을 주는 반려견을 의미합니다. 치료견은 장애인 보조 동물이 아니며, 시설 내 반려동물 정책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본 기관 웹사이트와 시설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으며, 발행물 및 정보 전달용 자료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대중 응대가 업무에 포함된 기관 직원은 업무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고 정보 또는 합리적인 편의 요청을 응대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받습니다.
- 본 기관은 다양한 장애 유형을 대변할 수 있는 개인으로 구성된 고문단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관련 정보

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 Article 15 (뉴욕주 인권법 15 항)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
New York State Building Code(뉴욕주 건축 규정)
OPRHP Interim Guidance Document Regarding Use of Other Power-Driven
Mobility Devices in NYS Parks and Historic Sites (October 14 2011)
(뉴욕주 공원 및 유적지 내 기타 전동 이동기기 사용에 대한 OPRHP 임시
지침, 2011년 10월 14일)

내역

2011년 09월 07일 로즈 하비 국장, 접근성 정책 발행.

2015년 06월 26일 2011년 정책 검토 및 형식 변경, 최소한의 내용 수정.